



주가치

주가치샘플 주식회사 (가상)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 보충적 평가방법

1주당 평가액

3,200 원

평가총액 32,000,000 원 · 10,000주

평가기준일 2025. 12. 31.

주가치 | 가상회사 샘플

작성 2026. 09



주가치샘플 주식회사 (가상)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수신: 주가치샘플 주식회사 (가상) 대표이사 가상대표 귀하 (이하 "귀사")

발신: 주가치 | 가상회사 샘플

일자: 2026년 09월 05일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주식가액 산정보고서 (평가기준일: 2025. 12. 31.)

주가치 | 가상회사 샘플(이하 "당사")은 귀사의 의뢰에 따라 주식 양도(이동)의 사전 검토를 목적으로 평가기준일 2025. 12. 31. 현재 귀사 발행 보통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본 평가는 보고서의 구성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 만든 가상의 회사정보와 재무수치입니다. 실제 고객 자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귀사만을 위하여 작성되었고 귀사가 제시한 자료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거나 제시한 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본 보고서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을 표명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귀사에 한정된 특정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있는 바, 동 보고서를 귀사 이외 다른 제3자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귀사를 위하여 작성된 바, 귀사 이외의 다른 제3자의 사용을 위하여 의도되거나 계획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전협의를 득하여 제3자(귀사의 고문 또는 상담자 포함)에게 본 보고서나 동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는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만약 이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면책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가치 | 가상회사 샘플 담당자(히츠컴즈 | 주가치)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치 | 가상회사 샘플
자동 산출 초안 서명 없음 (세무사 검토 전)

사용 제한

본 보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액 산정 결과로서 특정 거래의 적정가액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과세관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판단 및 제시 자료의 변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 차

머 리 말

제출문	02
경영진을 위한 요약	04

본 문

I	평가개요	05
II	평가방법	06
	결정 구조	06
	순자산가치의 산정	07
	순손익가치의 산정	08
III	평가결과	09
	재무 관측	10

별 첨

별첨	평가조서	11
	1주당 가액 총괄	11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서	12
	평가차액 명세서	13
	영업권 평가조서	14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서	15

적 용 법 령

상증법 § 60	평가의 원칙 — 시가 우선	상증법 § 63①1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상증법 § 63③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상증법 § 66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
상증령 § 49	시가의 범위와 평가기간	상증령 § 53	할증 배제 — 중소기업
상증령 § 54	가중평균, 순자산가치 80% 하한	상증령 § 55	순자산가액의 계산
상증령 § 56	순손익액, 유상감자 반영, 주식수 환산	상증령 § 59	영업권의 평가

요약 경영진을 위한 요약

3,200 원 / 주

평가기준일 2025. 12. 31. 현재 주가치샘플 주식회사 (가상) 보통주식 1주당 보충적 평가액. 순이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를 상회하여 가중평균액이 1주당 가액이 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1주당 순이익가치	1주당 평가가액
4,000 원	2,400 원	3,200 원
재무상태표 장부가액 기준 (세무사 검토 전)	3개년 순이익액 가중평균, 세무조정 차감 반영	가중평균 3:2 · 순자산가치 80% 하한 검토

결과 총괄

구분	금액	산식 · 근거
순자산가액 (영업권 포함)	40,000,000	별첨 순자산가치 계산서
발행주식총수 (소각목적 자기주식 제외)	10,000 주	상증령 § 54⑤
1주당 순자산가치	4,000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순이익가치	2,400	3년 가중평균 순이익액 ÷ 10%
가중평균액 (순이익 3 : 순자산 2)	3,040	상증령 § 54① 본문
순자산가치의 80%	3,200	상증령 § 54① 단서
1주당 평가액	3,200	Max[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 × 80%], 원 미만 절사
최대주주 등 할증	해당 없음	중소기업 — 상증령 § 53⑧9호
평가총액	32,000,000	1주당 평가액 × 발행주식총수

- 평가기준일 2025. 12. 31. 현재 주가치샘플 주식회사 (가상) 보통주 1주당 보충적 평가액(세무사 검토 전 초안).
- 순이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고 순자산가치의 80%와 비교함.

I 평가개요

1. 평가목적 및 평가기준일

본 평가는 주가치샘플 주식회사 (가상)(이하 "평가대상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식의 양도(이동)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2025. 12. 31. 현재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평가기초자료

보고서의 구성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 만든 가상의 회사정보와 재무수치입니다. 실제 고객 자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평가대상회사의 개요

항목	내용
법인명	주가치샘플 주식회사 (가상)
대표이사	가상대표
설립일	2018. 1. 1.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가상자료 - 해당 없음 / 가상자료 - 해당 없음
본점 소재지	샘플용 가상 소재지
업태 · 종목	가상 업태 / 가상 종목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액면 1,000원) / 소각목적 자기주식 0주
등기임원	사내이사 가상대표 / 감사 해당 없음

출처: 새로 생성한 가상 회사정보

4. 주주 구성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1주당 평가액	평가액
가상주주 A	본인	6,000	60.00%	3,200	19,200,000
가상주주 B	기타	4,000	40.00%	3,200	12,800,000
계		10,000	100.00%		32,000,000

출처: 가상 주주 구성

주주 간 특수관계와 최대주주등 해당 여부는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할증 배제 전제(상증법 § 63③, 상증령 § 53⑧6호·9호)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세무사 검토 단계에서 확인

II 평가방법 — 결정 구조

01 시가 존부의 검토

상증법 § 60 · 상증령 § 49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02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사유(§ 54④) 검토

상증령 § 54④

평가대상회사는 2018년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경과하였고, 청산 · 휴폐업 중이 아니며, 정관상 존속기한이 없어 상증령 § 54④ 1 · 2 · 6호의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등(0원)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0%로 50%에 미달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03 가중치 · 하한 · 할증의 결정

상증령 § 54①, 상증법 § 63③

부동산등 비율이 50% 미만인 일반법인이므로 순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고(상증령 § 54①), 그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80%를 하한으로 합니다. 평가대상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20%)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상증령 § 53⑧9호).

$$1\text{주당 평가액} = \text{Max} [(\text{순순익가치} \times 3 + \text{순자산가치} \times 2) \div 5, \text{순자산가치} \times 80\%]$$

$$\text{순순익가치} = 3\text{년 가중평균 순순익액} \div 10\% \quad \text{순자산가치} = \text{순자산가액(영업권 포함)} \div \text{발행주식총수}$$

평가의 전제

자료의 완전성

귀사가 제시한 세무조정계산서 · 재무제표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완전하고 정확함을 전제로 함.

시가의 부존재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경매 · 공매가액 등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함.

부동산 등의 평가

토지 · 건물은 이용자가 제시한 시가 또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정밀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 · 기준시가 · 임대료 환산가액 비교가 필요함(상증법 § 61, § 66).

세무상 조정

세무상 유보 · 퇴직급여추계액 · 평가차액은 세무사 검토 단계에서 보정됨을 전제로 함.

법령 기준

평가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및증여세법 ·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을 적용함.

II 순자산가치의 산정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에 상증령 § 55① 및 상증칙 § 17의2에 따른 조정을 가감하고 상증령 § 59②의 영업권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자산은 상증법 § 60~§ 66에 따른 평가액과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이면 0원으로 합니다.

구분	조정 내용	근거
자산 가산	평가차액(상증법상 평가액 - 장부가액), 자산성 유보금액,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	상증령 § 55①, 상증칙 § 17의2 1호
자산 제외	비용 확정 선급비용, 개발비, 이연법인세자산	상증칙 § 17의2 2호
부채 가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 등, 확정 배당 · 상여, 퇴직급여추계액	상증칙 § 17의2 3호
부채 제외	제준비금 · 제충당금(비용 확정분 제외), 이연법인세부채	상증칙 § 17의2 4호
영업권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 × 50% - 자기자본 × 10%] × 3.7907867694	상증령 § 59②, 상증칙 § 19①

본 건 주요 판단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자산 · 부채는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제시한 퇴직급여추계액과 부동산 시가 ·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무상 유보, 대손충당금 · 감가상각누계액의 세법상 재계산, 이연법인세 제거 등은 세무사 검토 단계에서 보정됩니다.

차입금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그 경우 상증법 § 66에 따라 담보채권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세무사 검토 단계에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순자산가액 요약

구분	금액 (원)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50,000,000
자산 가산 — 평가차액 · 유보금액	-
자산 제외	-
자산총계	50,000,000
재무상태표상 부채액	10,000,000
부채 가산 — 퇴직급여추계액	-
부채 제외 — 제충당금	-
부채총계	10,000,000
영업권	-
순자산가액	40,000,000

II 순손익가치의 산정

1주당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순손익가치환원을 10%(상증칙 § 17)로 나누어 산정하며, 가중평균액이 음수이면 0원으로 합니다(상증령 § 56①).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 14의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증령 § 56④1호의 금액을 더하고 같은 항 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며, 유상증자·유상감자가 있는 경우 같은 조 ⑤의 반영액을 가감합니다.

구분	항목	근거
가산	과오납 환급금이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기부금·업무용승용차 이월 손금산입액, 외화환산이익 미반영분	상증령 § 56④1호
차감	법인세·농특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 벌과금, 손금 불인정 공과금·업무무관 지출,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상증령 § 56④2호
증감자 반영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소 주식수 × 10%를 감자 사업연도(월할)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서 차감	상증령 § 56⑤, 상증칙 § 17의3⑥
주식수 환산	감자 전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감자 후 기준으로 순차 환산	상증령 § 56③, 상증칙 § 17의3⑤

본 건 주요 판단

순손익액은 최근 3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 벌과금,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상증령 § 56④). 유상증자·감자가 있는 경우의 환산은 세무사 검토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3개년 순손익액 요약

구분	2025	2024	2023
각사업연도소득	3,000,000	2,500,000	2,000,000
차감 합계 (법인세 등·손금불산입액)	300,000	250,000	200,000
유상감자 반영액 (§ 56⑤)	-	-	-
순손익액	2,700,000	2,250,000	1,800,000
환산주식수	10,000	10,000	10,000
1주당 순손익액	270	225	180

가중평균액 240원 ÷ 10% = 1주당 순손익가치 2,400원

III 평가결과

구분	금액	산식 · 근거
① 순자산가액 (영업권 포함)	40,000,000	별첨 순자산가치 계산서
② 발행주식총수	10,000 주	소각목적 자기주식 1,800주 제외
③ 1주당 순자산가치 (①÷②)	4,000	원 미만 절사
④ 1주당 순손익가치	2,400	별첨 순손익가치 계산서
⑤ 가중평균액 [(④×3+③×2)÷5]	3,040	상증령 § 54① 본문
⑥ 순자산가치의 80%	3,200	상증령 § 54① 단서
⑦ 1주당 평가액 [Max(⑤, ⑥)]	3,200	원 미만 절사
⑧ 최대주주 등 할증	해당 없음	중소기업 — 상증령 § 53⑧9호
⑨ 평가총액 (⑦×②)	32,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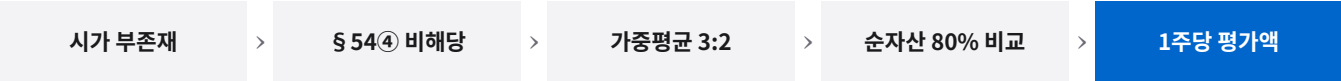
결론

평가기준일 2025. 12. 31. 현재 주가치샘플 주식회사 (가상) 보통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3,200원, 평가총액은 32,000,000원(10,000주 기준)입니다.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금액은 위 계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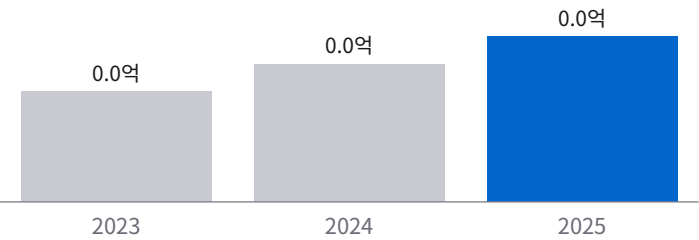
- (시가)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감평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음(상증법 § 60③, 상증령 § 49).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 인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사 검토 단계에서 확인함.
- (순자산가액) 자산·부채는 재무상태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였으며, 세무상 유보·평가차액·퇴직급여추계액 반영은 세무사 검토 단계에서 보정됨.
- (순손익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액에서 법인세 등 총결정세액, 벌과금,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업무용승용차·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였음(상증령 § 56④, 상증칙 § 17의3).
- (영업권) 자기자본이익률 초과이익이 있는 경우 상증령 § 59②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음.
- (할증) 중소기업 할증 배제 전제(상증법 § 63③, 상증령 § 53⑧6호·9호)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세무사 검토 단계에서 확인

결정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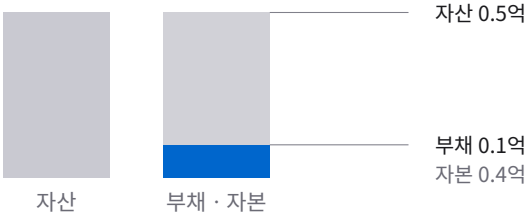


관측 재무 관측

3개년 순손익액 (상증령 § 56 기준)



자산 · 부채 · 자본 (2025. 12. 31.)



관측 1 — 3개년 각사업연도소득 추이가 순손익가치를 결정하며, 최근 연도 가중치(3/6)가 가장 큼.

관측 2 — 부동산등 비율 약 0.0% — 일반법인 가중치 적용.

관측 3 — 세무상 유보 · 평가차액 반영 시 순자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검토 단계에서 보정 필요.

주요 재무지표

구분	2025년	2024년
매출액	15,000,000	12,000,000
영업이익	3,000,000	2,500,000
당기순이익	2,700,000	2,250,000
자산총계	50,000,000	45,000,000
부채총계	10,000,000	10,000,000
자본총계	40,000,000	35,000,000
영업이익률 / 부채비율	20.0% / 25.0%	20.8% / 28.6%

별첨 1주당 가액 총괄

구분	금액 (원)
(1)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50,000,000
(2) 평가차액	-
(3)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
(4) 자산 제외 (선급비용 등)	-
가. 자산총계	50,000,000
(5) 재무상태표상 부채액	10,000,000
(6) 퇴직급여추계액 가산	-
(7) 제충당금 차감	-
나. 부채총계	10,000,000
(8) 영업권	-
다. 순자산가액 (가-나+(8))	40,000,000
(9) 발행주식총수 (주)	10,000
라. 1주당 순자산가치	4,000
(10) 3년 가중평균 1주당 순손익액	240
마. 1주당 순손익가치 ((10)÷10%)	2,400
바. 가중평균액 [(마×3+라×2)÷5]	3,040
사. 순자산가치의 80%	3,200
아. 1주당 평가액 [Max(바, 사)]	3,200
자. 평가총액 (아×(9))	32,000,000

본 조서는 세무사 검토 전 자동 산출 초안으로서 참고용이며, 과세관청 제출용 평가보고서는 세무사의 검토·날인을 거쳐 별도 발행됩니다.
[주]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는 중소기업 해당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상증법 § 63③, 상증령 § 53⑧9호).

별첨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서

구분	항목	금액	비고
자산 가산	(1)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50,000,000	2025. 12. 31. 확정 결산
	(2) 평가차액	-	평가차액 명세서
	(3)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4) 유상증자 등 · (5) 기타	-	
자산 제외	(6) 선급비용 등 · (7) 기타	-	
	가. 자산총계	50,000,000	
부채 가산	(8) 재무상태표상 부채액	10,000,000	
	(9)~(11) 법인세 · 농특세 · 지방소득세	-	미지급법인세 계상 완료
	(12) 배당금 · 상여금	-	
	(13) 퇴직급여추계액	-	별지 제32호 추계액
부채 제외	(15) 제준비금 · (16) 제충당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총액
	나. 부채총계	10,000,000	
	(18)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	40,000,000	
	(19) 영업권	-	영업권 평가조서
	(20) 순자산가액	40,000,000	
	(21) 발행주식총수 (주)	10,000	자기주식 1,800주 제외
	(22) 1주당 순자산가치	4,000	원 미만 절사

유보금액 명세

과목	기말잔액	반영액	근거
해당사항 없음	-	-	부채 인정 · 평가차액 및 추계액에서 총액 반영 — 미반영
합계		-	

별첨 평가차액 명세서

자산 계정과목	상증법상 평가액	재무상태표상 금액	차액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50,000,000	-
자산 합계	50,000,000	50,000,000	-

부채 계정과목	상증법상 평가액	재무상태표상 금액	차액
미지급금	10,000,000	10,000,000	-
부채 합계	10,000,000	10,000,000	-

[주] 평가차액 = 자산 차액 합계 - 부채 차액 합계 = -원.
[주] 자산·부채는 재무상태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음(세무사 검토 전 초안). 부동산은 이용자가 제시한 시가·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반영함.

별첨 영업권 평가조서

구분	금액 (원)	산식 · 근거
(1)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2,400,000	$(2025 \times 3 + 2024 \times 2 + 2023 \times 1) \div 6$
(2) 가중평균액의 50%	1,200,000	$(1) \times 50\%$
(3)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40,000,000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
(4) 자기자본의 10%	4,000,000	$(3) \times 10\%$ (상증칙 § 19①)
(5) 초과이익 ((2)-(4))	△2,800,000	
(6) 영업권 평가액	-	$(5) \times 3.7907867694$, 0 이하는 0

영업권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50%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10%] × (1 - 1.1☐☐) ÷ 0.1 (상증령 § 59②, 상증칙 § 19①). 평가대상회사는 상증령 § 55③ 단서의 영업권 미가산 사유(청산·부동산등 80% 이상·사업개시 3년 미만·3년 계속 결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정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습니다.

3개년 순손익액 (§ 56⑤ 반영 후)

구분	2025	2024	2023
순손익액	2,700,000	2,250,000	1,800,000
가중치	3	2	1
가중치 반영액	8,100,000	4,500,000	1,800,000

합계 14,400,000원 ÷ 6 = 2,400,000원

별첨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서

구분	2025 사업연도	2024 사업연도	2023 사업연도
(1) 각사업연도소득	3,000,000	2,500,000	2,000,000
(2) 벌금 · 과료 · 과태료 · 가산금	-	-	-
(3)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등	-	-	-
(4)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	-	-
(5)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	-	-
(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	-
(7) 법인세 총결정세액	300,000	250,000	200,000
(8) 농어촌특별세	-	-	-
(9) 지방소득세	-	-	-
(10) 차감 합계	300,000	250,000	200,000
(11) 순손익액 ((1)-(10))	2,700,000	2,250,000	1,800,000
(12) 유상감자 반영액 (§ 56⑤)	-	-	-
(13) 순손익액 ((11)+(12))	2,700,000	2,250,000	1,800,000
(14) 환산주식수 (주)	10,000	10,000	10,000
(15) 1주당 순손익액	270	225	180

구분	금액	산식
(16)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240	$(2025 \times 3 + 2024 \times 2 + 2023 \times 1) \div 6$
(17) 순손익가치환원율	10%	상증칙 § 17
(18) 1주당 순손익가치 ((16)÷(17))	2,400	원 미만 절사

주)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차감항목은 이용자가 제시한 법인세 신고서 기준(세무사 검토 전).
주) (2) 유상증자, 감자 환산(상증령 § 56③)은 반영되지 아니함 — 해당 시 검토 단계에서 보정.



주가치 | 가상회사 샘플

JUGACHI - FICTIONAL SAMPLE - DRAFT

담당 히츠컴즈 | 주가치